

교원 경력 환산 기준

연번	경 력 내 용	환산율
1	4년제 대학 전임교원 경력	100%
2	사관학교 및 학사과정의 단기 사관학교 전임교원(교육부장관 인정) 경력	100%
3	교육부에 등록된 국립 특수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기관, 장관의 동의를 받은 중앙공무원 교수직 경력	100%
4	교육부에 등록된 대학과정 각종학교(학력인정교), 초급대학, 전문대학 전임경력	80%
5	대학에서의 담당과목과 부합되는 교육경력(비전임교원, 강사, 각급학교 교육경력 등)	
	가. 대학, 대학과정 각종학교(학력 인정교)의 주당 9시간 이상 강의경력	50%
	나. 초급대학, 전문대학의 주당 9시간 이상 강의경력	30%
	다만, 가 또는 나 의 경력이 9시간 미만일 때에는 그 시간수에 비례하여 환산함.	
	다. 유치원, 초등학교, 중고등학교 교원경력 및 공인 체육단체나 각 대학 체육 코치 경력	
	1) 학사이후	50%
	2) 석사이후	70%
6	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대학 총(학)장의 발령에 의한 조교 경력	30%
7	학위취득 경력	
	가. 석사(2년)	100%
	나. 박사(3년)	100%
	다만, 디자인, 공예, 미술, 음악 계열의 경우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업적을 평가하여 인정함.	
	국가기관, 공공단체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에서 대학에서의 담당과목	
8	과 관련되는 전임 연구경력	
	가. 학사이후	20%
	나. 석사이후	50%
	다. 박사이후	100%
8-1	대학 및 대학 부속기관(연구소)에서 대학 총장의 발령에 의한 대학에서의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전임 연구경력	
	가. 석사이후	40%
	나. 박사이후	70%
9	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	
	가. 학사이후	70%
	나. 석사이후	80%
	다. 박사이후	100%
	외교관.판사.검사.변호사.회계사로 근무한 경력	100%
10	공인된 상설 예.체능 및 창작.실기 단체 주요간부 근무경력	70%
11	본교 전임교원이 박사학위 취득시 호봉에 한하여 특별 경력인정	2년
12	다만, 1988. 9. 1 이후에 임용된 교원은 제외함. 6개월 미만의 단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.	
13	합산경력의 1년 미만은 절삭	
14	다만, 부족일수가 15일 이내인 1년 미만의 합산경력은 1년으로 인정함.	